

집합제한명령안내

1. 사천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지역 대유행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어 4월 26일 0시부터 적용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.
2. 이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증점관리시설 11종, 일반관리시설 15종 및 기타시설 2종에 대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, 다음과 같은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기 간 : 2021.4.26.(월) 0시 ~ 2021.5.2.(일) 24시

나. 대 상 : 증점관리시설 11종, 일반관리시설 15종, 기타시설 2종

3.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귀 업소에서의 집합행위는 제한되고, 이를 위반할 경우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1. 4. 26.

사 천 시

